- 2026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6년 9월 11일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1. 감사의 목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6. 9. 2.(수) ~ 9. 7.(월) [6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마포복지재단

4. 감사실시 결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보건복지위원회	[위 원 장] 남 해 석 [부위원장] 강 수 영 [위 원]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	미 래 교 육 국	보건복지위원회실	장홍용	최은영
		복 지 국			
		보 건 소			
		마포복지재단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 부서 및 주민센터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2026. 9. 2.(수)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보육정책과 가족정책과	보건복지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6. 9. 3.(목)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어르신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6. 9. 4.(금)	마포복지재단	보건복지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6. 9. 7.(월)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복지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5.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미래교육국

▣ 미래교육국 [1건]

○ 정책연구용역 추진 전 관계부서·의회·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역 결과를 행정에 반영할 때에는 구의 공식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및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용역 발주부터 결과 활용까지 단계별 검토·관리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 교육청소년과 [5건]

○ 마포 365천문대는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주와 과학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교육 영향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람.

○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하여 해마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의 신청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확인과 집행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하고, 심의 단계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람.

○ 자율학습공간 스페이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별 이용률 편차가 크고 누적 이용인원 위주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좌석·시간대별 이용률과 투입비용 대비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시설별·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단순 좌석 운영이 아니라 실제 학습권 보장과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성과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AI·디지털 활용교육 확대와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및 숏폼 과의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관내 청소년의 연령별 이용행태와 과의존 위험도, 주 이용 플랫폼, 보호자의 교육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상담·교육·가족지원이 연계된 마포형 예방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 교육 예산 편성 시 학생의 진로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및 지원 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에 힘쓰기 바람.

▣ 평생학습과 [2건]

○ 어린이 자료를 포함한 도서 선정과 인권 관련 큐레이션·강연 운영 시 자료선정 기준과 책임 주체가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함. 사서의 전문성을 존중하되 연령 적합성, 공공성, 다양성 및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선정위원회의 검토 절차와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람.

○ 점자라벨 도서는 관계기관의 보급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신규 확보 실적이 없는 상황임.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의 보급계획과 수요조사 일정을 적극 확인하고 적기에 신청하는 한편, 대체자료와 연계서비스를 확충하여 시각장애인의 도서 접근성을 높이기 바람.

▣ 보육정책과 [2건]

○ 보육정책과 업무보고에는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기재된 반면 가족정책과 자료에는 건물 활용방안 전면 재검토로 사업중단 표시되어 동일 사업의 추진상황이 서로 다르게 보고됨. 또한 중요사업의 중단·폐지 또는 활용방안 변경을 검토할 경우 부서 간 자료를 사전에 일치시키고, 의회에 변경 사유와 향후 계획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길 바람.

○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점검 실시 자체보다 발견된 위험요인의 해소 여부가 중요함. 시설별 안전점검·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인, 개보수 내용, 조치 완료 여부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지원대상 선정 시 노후도와 긴급성 등 객관적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원 누락과 장기 미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가족정책과 [2건]

○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참여인원·프로그램 수·회의 횟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제시되어 아동의 발달·정서·행동 변화와 사례회의를 통한 문제해결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대표 해결사례를 포함한 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기 바람.

○ 노고산 복지센터 내 빠카페 이용실적이 7개월간 18명에 불과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음. 단순 홍보 확대에 그치지 말고 이용대상·운영시간 이용조건 등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가 높은 맘카페와의 통합·확장 또는 다른 주민수요 시설로의 전환 등 공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복 지 국

▣ 복지국 [1건]

○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 악성민원과 과도한 복지요구 등으로 감정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심리상담과 회복프로그램, 민원 대응 및 신변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민관 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복지정책과 [5건]

○ 마포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준은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수혜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예우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 재정여건과 다른 자치구의 지원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 마포구가 앞장서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주길 바람. 더불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연령별 가산지원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람.

○ 마포구에는 대규모 사회복지법인과 국제구호단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들 기관이 보유한 후원금품 및 복지자원을 관내 취약계층과 연계하기 위한 협력은 없었음. 관내 NGO 및 사회복지법인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기 바람.

○ 주거지원주택 103개소 중 일부가 높은 임대료, 복층구조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간 주택별 공실률과 입주율, 시설별 투입비용 및 공실 원인을 분석하고,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설개선과 입주율 제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입주자가 향후 일반 임대주택이나 자립주거로 이전한 실적까지 관리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바람.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후원금이 어르신밥상 등 특정 사업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특정 사업에 후원이 편중되어 다른 취약계층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별 모금액과 기부금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구 전체의 민간 기부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 지원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과 사업관리, 감독 과정에서 행정기관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겪고 있음. 워크숍이나 표창 등 일회성 격려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회복,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또한 행정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을 단순한 관리, 감독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권위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한 수평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바람.

▣ 생활보장과 [2건]

○ 자활사업의 성과는 단순 참여인원보다 취업,창업 및 탈수급 등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립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업의 성과지표를 참여실적 중심에서 취업·창업·탈수급 등 자립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기 바람.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실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단순 발굴 건수보다 서비스 연계율과 지원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미연계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바람.

▣ 통합돌봄과 [1건]

○ 자살예방사업의 실적이 회의·교육·홍보 횟수 중심으로 제시되어 고위험군 발굴과 치료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통합돌봄과는 자살예방 총괄부서로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군 발굴, 상담·치료 연계, 자살시도자 관리 및 사후관리 실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주길 바람.

▣ 어르신정책과 [7건]

○ 경로당 가스시설 보수 등 시설공사 자료를 여러 경로당의 합계금액으로 일괄 기재하여 개별 시설의 보수내용과 집행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향후 의회 제출자료에는 경로당별 공사내용, 공사시기 및 집행금액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 기존 ‘주민참여 효도밥상’을 ‘어르신밥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별도의 효과분석 없이 현판·홍보물 등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였음. 사업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도록 급식 대상 확대, 식사의 질과 영양관리, 안부확인, 건강상담 및 위기징후 발견 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발전된 사업으로 운영하기 바람.

○ 어르신밥상 사업이 단순한 급식제공이나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추진하고, 무엇보다 급식,건강, 돌봄 원스톱 지원으로 어르신밥상이 식사 지원과 건강돌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적인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경로당에 지급한 양곡의 실제 소비량과 잔량, 사용 목적 등을 사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목적 외 사용이나 과다 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경로당별 양곡 수령량·소비량·잔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동일 시설에 소규모 수선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경로당별 노후도와 안전성을 반영한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그냥해드림센터’는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고, 소득·재산 기준 없이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지원 우선순위, 지원한도, 전문공사 제외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운영인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종합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그냥해드림센터’ 사업은 근거 조례와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개시일을 정하고 모집공고와 예산 전용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의회의 조례·예산 심의권을 형식화할 우려가 있음.

향후 근거 조례 제정,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대상자선정기준 검토, 세부 운영계획 수립, 적정 인력과 소요예산 산정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202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조례 및 예산 심의에 앞서 사업을 사실상 확정하거나 선행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 대한노인회 관련 규정은 경로당 수가 100개 미만인 지회의 경우 이사 15명으로 구성하고, 100개를 초과할 때에는 매 100개까지 ‘5인씩’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포구지회는 현재 이사를 18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음.

‘5인씩’의 의미가 반드시 5명 단위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한노인회 중앙회 또는 서울시연합회에 확인하고, 확인 결과 현행 이사 구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관과 규정에 맞도록 개선을 요구하기 바람.

▣ 장애인정책과 [1건]

○ 장애인 관련 행사가 행정기관이나 특정 단체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와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음. 행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휠체어 접근성, 이동 편의 및 식사 제공 등 당사자의 실제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마포복지재단

○ 청소년 지원사업은 2026년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21.6%에 그치고 있으며, 꿈나무 교육비 및 드림브릿지 사업의 월평균 지원실적도 당초 계획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제대로 찾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동주민센터·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소득기준 등의 차이로 실제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기 바람. 아울러 사업성과를 단순한 지원인원이나 집행액으로 평가하지 말고 청소년의 학업·진로·정서적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 어르신밥상 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한 출결관리를 위해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하였으나, 얼굴정보는 유출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안면인식 기술 자체의 활용을 제한하기보다는 복지현장에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편리성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얼굴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서면확인 등 대체수단이 있다는 사실과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기 바람.

○ 어르신밥상 이용자들 사이에서 최근 음식의 맛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음. 재단이 9월 1일부터 반찬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조정하면서 음식의 질을 높이고 모니터링 결과 맛있어졌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반찬의 가짓수보다는 음식의 맛·영양·품질을 우선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 안면인식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한 번에 인식되지 않아 서너 번 또는 다섯 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됨. 기존 바코드 방식이 오히려 편리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안면인식 시스템의 인식률을 점검하고, QR코드 등 다른 출결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복지재단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 연계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재단 측에서 추가적인 협력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여, 재단의 업무 수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 NGO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자원 활용 및 민간 협력체계 강화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길 바람.

○ 어르신밥상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예산으로, 부식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일반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기존의 나눔과 후원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어르신 밥상을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홍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여 수혜자의 감사가 다시 후원과 나눔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쌍방향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바람.

○ 반찬 판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재정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나 수익사업으로 인해 마포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와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신규 수익사업 추진 전 관내 반찬가게 등 동일 업종 현황,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민간업체 판매가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한지 검토해 주길 바람. 특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판매보다는 취약계층 등 공공성이 분명한 영역에 집중하기 바람.

○ 기존 반찬공장과 식자재 공급망을 활용하여 퇴근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반찬을 판매하는 방안은 공공출연기관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부담하며 영업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직접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재단의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마포복지재단의 존재이유와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성이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바람.

○ 재단이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핵심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충실히 달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어르신밥상의 경우 단순한 이용인원이나 사업규모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어르신의 건강확인, 상담 및 돌봄 연계 등 사업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필요가 있음. 기존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 수적 확장을 계속할 경우 재단 본연의 설립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핵심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바람.

○ 청소년의 미래사회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AI 활용 및 디지털 역량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3%로 전체 이용자 22.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시 AI 활용능력을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스마트폰·SNS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디지털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 나눔네트워크 사업의 지원내역을 합산할 경우 총 11,666건이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11,662건으로 기재되는 등 합계 오류가 확인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의회의 정책판단과 기관 업무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만큼 담당자 및 관리자의 단계별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계·집행실적·합계 등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보 건 소

▣ 보건소 [1건]

○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달리 질병 예방, 환경위생, 보건교육 등 주민의 건강을 사전에 지키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예방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제도와 조례도 변화해야 하므로 기존 방식을 뒤따라가기보다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또한 보건소 사업을 단순히 알려주는 관보가 아니라 홍보, 즉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반응과 의견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 보건행정과 [5건]

○ 결핵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가운데 이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데이케어센터·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노인결핵 수요조사가 단순히 수요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를 다음 연도 검진 대상과 횟수, 지역 선정에 실제 반영하고,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관리하기 바람.

○ 생명존중 캠페인과 자살예방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자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횟수나 상담건수와 같은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됨.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방문과 면담, 위기개입 등 실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상담소 등을 적극 연계하여 숫자가 아니라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 보건소 인력만으로 마포 전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소독하기는 힘든 만큼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등 지역의 민간 방역자원과 수시로 연대할 필요가 있음. 행정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과 관이 서로 협조하여 보완하고, 동주민센터와 자율방역조직이 지역의 방역 취약지점을 함께 관리하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힘과 행정을 연결하는 민과 관이 연결되어 있는 협치가 실질적인 지역 방역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바람.

○ 보건소는 정원 118명에 현원 106명으로 12명이 부족한 가운데 8월까지 3만 7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주민의 불친절 민원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몸이 아프거나 검사·예방접종 등을 위해 방문한 주민은 예민할 수 있고 직원 역시 하루 종일 민원에 쫓길 경우 서로 어려움을 느끼는 구조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왜 불친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부터 측정하여 평균 대기시간, 혼잡 시간대, 직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와 악성민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직원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교육과 인력·근무여건 개선을 병행하기 바람.

○ 스마트 구서장비가 민원 다발지역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기존 설치지역 외에서도 쥐 출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 불안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가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

해 주길 바람. 또한 기온 변화에 따라 모기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에는 고인 물 등 방역 취약지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및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쥐·모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방역문제를 세심하게 관리하기 바람.

▣ 위생과 [4건]

○ 홍대일대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 고용 여부 등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우려됨. 특히 성평등가족부에서도 변종 메이드카페의 업종 분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만큼, 단순히 신고업종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영업형태와 청소년 고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점검을 강화해 주길 바람.

○ 홍대지역의 특성과 주거환경, 청소년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춤 허용업소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신규허용을 제한할 경우 기존 업소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신규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한의 필요성과 정책적 명분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행정에 대한 공감과 수용성을 높이기 바람.

○ 홍대 인근 춤 허용업소, 유해업소 등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야간 심야시간대 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홍대의 청년·외국인 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업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영업자들이 불법 약물 사용,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의 예방 단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마포구가 관련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하기 바람.

○ 염리초등학교 앞 거리가게·포장마차에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신고 업소라는 이유로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됨.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영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특정요일 위주로 나가지 말고 요일을 바꿔가면서 점검하기 바람. 특히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위생과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건강증진과 [5건]

○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되었으나 감사 당시 마포구의 추가 대상 인원은 즉시 파악되지 않았음. 정부의 확대정책에 맞춰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준비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특히 향후 15세까지 확대될 가능성 등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만 대응하기보다 대상인원, 백신 물량 및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길거리·횡단보도 등 일부 장소는 현행 제도상 직접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횡단보도나 정류소 앞을 제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인 만큼, 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AI 흡연감지 시스템 등의 현황과 실제 민원 감소 효과를 확인하여 마포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학교 주변·횡단보도·정류소 등 민원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간접흡연 예방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 현행 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음. 안 된다고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례를 꼼꼼하게 바꿔볼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정류소 주변 등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가능성과 상위법 저촉 여부를 연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실적 2,962건은 동일인이 여러 차례 지원받은 건수를 포함한 수치인 만큼 지원건수뿐 아니라 실제 지원인원과 임신·출산으로 이어진 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난임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보다 시술이 실패했을 때일 수 있으므로, 반복된 시술 실패로 우울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상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강화하기 바람. 난임정책의 성과도 의료비 지급 횟수가 아니라 몇 가정이 임신했고, 몇 가정이 아이를 품었으며, 실패했을 때 몇 가정을 다시 정신건강 측면에서 일으켜 세웠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바람.

○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대흥동 염리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사가 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요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방문하기에 불편한 실정임. 치매는 조기검진과 지속적인 상담·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용자의 접근성이 사업의 실효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지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현재 검토 중인 신촌지역 재개발구역 내 공간 확보 등 이전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매검진과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의약과 [4건]

○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이 보다 쉽게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자신의 수행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키오스크 등 체험형 교육장비의 도입을 검토해 주길 바람.
향후 안전관리센터 조성 시 관련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만큼,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마련할 시 추진상황을 공유해 주길 바람.

○ 현재 약물 오남용 교육이 마약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관심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와 같은 새로운 약물사용 추세가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의사의 적절한 처방에 따른 치료제 사용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 정상 체중자의 미용 목적 사용, 무분별한 처방, SNS를 통한 잘못된 정보 및 불법유통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예방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하고 전문가 검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약물사용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바람.

○ 마약류 익명검사는 전년도 150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14건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검사 과정에서 주변 시선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확인됨. 익명검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건소 소식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 양성 사례의 경우 익명성은 보장하되 중독치료 동행의원 등 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고등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실효성 있게 확대해 주길 바람.

○ 심폐소생술 상설교육과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사람은 보건소 교육장에서 쓰러지지 않고 지하철·길·식당·회사 등 생활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이 실제 생활하는 현장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건소에서 2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뿐 아니라 공덕역·홍대입구역·합정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이 3~5분이라도 직접 가슴압박을 해보고 AED를 열어보는 체험형 교육을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추진해 주길 바람.

나.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6년 11월 2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